

1993. 12. .

도시건설위원회동의안

불법주·정차차량견인업무대행협약서 체결에 관한 동의안

도시건설위원회

불법주.정차 차량견인업무 대행협약서 체결에 관한 위원회 동의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1993. 12. .

발의자 서 용 의원의 인

(도시건설 위원장)

1. 제안이유

- 제 29 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 6 차 도시건설위원회 (93. 12. 7) 에서 93 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시 서구청장과 교통관리공사 사장간에 불법주정차 차량견인업무대행협약서 체결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94 년도 협약서 체결시 위원회 의견을 수렴 체결토록 요청하였던바 1993. 12. 20 서구청장으로부터 좋은 의견있으시면 통보해 주라는 요구가 있어 1993. 12. 22 10:00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거쳐 위원회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 협약서 제 3 조 제 1 항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업무 대행기간은 1994 년 1 월 1 일 부터 1994 년 12 월 31 일 까지 1 년으로 한다로하고
- 협약서 제 5 조 제 2 항 "갑"이 지정하는 다음 각호의 차량에 대하여 "을"은 지체없이 이동보관 및 반환등의 업무를 대행한다로하고
- 협약서 제 5 조 2 항 3 호 각종행사 주변 및 눈·비 또는 재난상 견인불가능시에 교통소통업무로하고

- 협약서 제7조 제2항은 93년도 당초안대로 하며
- 제10조 제1항 "갑"은 "을"이 제5조의 대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재정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회의 승인에 따라 운영비 일부와 이윤을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있으며 지원한 보조금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로 하며
- 제11조 제2항 "을"은 손해배상을 제3조 대행기간과 같이 이행하기 위하여 "갑"에게 5천만원 이상의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매년 재협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것이 주요골자임. (동의안 별첨)

불법주정차 차량견인업무 대행협약서 체결에 관한 위원회 동의안

제1조 (목적) 광주직할시 서구관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체증 해소 및 시민의 교통편의를 돕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 31조의 2 및 광주직할시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의하여 불법 주정차차량의 견인업무를 위탁 대행코자 함.

제2조 (협약당사자)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 대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광주직할시 서구청장을 "갑" 이라 하고 광주직할시 교통관리공사 사장을 "을" 이라 칭한다.

제3조 (대행기간) ①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업무 대행기간은 1994년 1월 1일 부터 1994년 12월 31일 까지 1년으로 한다.

② 이 협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협약코자 할 때에는 협약만료 30일 전에 "을"은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대행구역) 이 협약에 지정하는 구역은 광주직할시 서구 전 지역으로 한다.

제5조 (대행업무) ① "갑"은 소속공무원 또는 단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동표지 등을 첨부하여 견인대상차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갑"이 지정하는 다음 각호의 차량에 대하여 "을"은 지체없이 이동보관 및 반환등의 업무를 대행한다.

1.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불법주정차차량
2. 노상공터 또는 기타 장소에 방치(폐차)된 차량(5톤 견인차량 지원)
3. 각종 행사장주변 및 눈·비 또는 재난상 견인 불가능시에 교통소통업무
4. 기타 필요에 따라 "갑"이 지정하는 차량

제6조 (인력지원) ① "갑"은 "을"이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및 과태료와 소요비용 등의 징수업무에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요청할때는 이 업무에 한하여 파견할 수 있다.

② "을"에게 파견된 공무원의 기본급여는 "갑"이 지급하고 "을"은 실비 성격인 기타수당등을 파견전 상당액 이상으로 지급한다.

제7조 (장비지원) ① "갑"이 "을"에게 지원하는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내역은 별표와 같으며,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한다.

② 장비의 무상대부기간은 제3조 대행기간으로 하고, "갑"과 "을"이 아의없이 협의한 정상품으로 인수인도 한다.

③ "을"은 장비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를 다하여야하며 관리비와 제세공과금등 일체의 부담경비를 인수받는 날부터 부담한다.

④ 장비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지고 운영하여야하며 운영자인 "을"이 명의상 소유를 이유로 "갑"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⑤ 장비는 "을"이 지정된 사용년한을 사용하여 폐품화 되었을때 불용 결정 할 수 있으나 만약 사용년한이내에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광주직할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제23조의규정에의하여 변상하여야한다.

⑥ "을"은 장비를 제5조의 대행 업무이외의 업무에 사용 할 수 없다.

제8조 (과태료등의 징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차량의 과태료와 소요비용 등은 "갑"이 징수한다.

제9조 (대행비 청구) ① "을"은 대행업무의 수행실적에 따라 대행비용을 월 2회 지급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견인비용 해당금액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비 및 이윤지원) ① "갑"은 "을"이 제5조의 대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재정적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의회의 승인에 따라 운영비 일부와 이윤을 보조금으로 보전할수 있으며 지원한 보조금에 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장비 사용년한을 사용하고 불용처분하여야 할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장비를 대체하게 하고 "갑"은 대체 장비의 사용년한에 따라 년부로 감가상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보증) ① "을"은 제5조의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에게 피해를 가했을 때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을"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은 손해배상을 제3조 대행기간과 같이 이행하기 위하여 "갑"에게 5천만원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매년 재협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양도금지) "을"은 제3자에게 대행권을 양도하거나 일부를 위탁할 수 없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협약에 규정이 없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도로교통법 및 관련조례의 규정과 해석에 따르며 "갑"과 "을"의 상호협의를 의한다.

제14조 (효력발생)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에 발생하여 이 협약으로 인한 행위가 모두 마무리 되었을때 종료된다.

② 이 협약을 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